

**국가중요
과학기술자료
등록 안내서**



**국가중요
과학기술자료
등록 안내서**



목 차

1장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무엇인가요?	6
	1-1. 제도 소개	6
	1-2. 어떤 자료들이 등록될 수 있나요?	6
2장	등록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7
	2-1. 소유자, 관리기관의 등록 신청	7
	2-2. 서류검토	7
	2-3. 서류심사	8
	2-4. 현장조사	8
	2-5. 현장심사	8
	2-6. 공고 및 의견청취	9
	2-7. 종합심사	10
	2-8. 등록	10
	2-9. 등록증 교부	10
3장	등록 이후 관리·지원	11
	3-1. 관리실태조사란?	12
	3-2. 등록 자료 지원	13
4장	등록제도 질의응답	14
5장	관련 법령 및 고시	16
6장	관련 서식	24

1장.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무엇인가요?

1-1. 제도 소개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찬란한 과학기술 역사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성과와 의미가 담긴 자료들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을 줄 표석입니다. 따라서 자료들에 담긴 가치가 퇴색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널리 알리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는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를 지닌 자료들을 등록하여 보존·관리·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승하는 제도입니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란 과학기술자료* 중 국가적 차원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국내 소재 자료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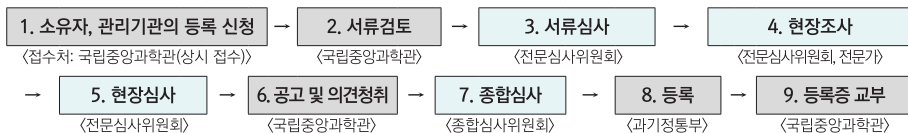
*과학기술자료: 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 시설물 또는 영상매체 등을 이용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자료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1-2. 어떤 자료들이 등록될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 소재하며 다음의 기준(과학관법 시행령 제4조의2)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초과학, 응용과학, 산업기술, 과학기술사, 자연사 등에 관한 과학기술자료들이 등록 대상입니다.

- ① 과학기술적 원리가 적용되거나 과학현상을 규명하여 과학기술발전사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되는 것
- ②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것
- ③ 과학기술발전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것
- ④ 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

2장. 등록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2-1. 소유자, 관리기관의 등록 신청

○ 신청 자격(과학관법 시행령 제4조의3):

- 과학기술자료의 소유자, 소유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과학기술자료인 경우, 이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관리기관

○ 접수 기간: 상시접수

○ 접수 방법: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knsh@korea.kr)으로 제출

- 접수처: 우)34143,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유산보존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담당자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신청서[6장, 관련 서식]
- ② 신청대상 자료 설명서[6장, 관련 서식]
- ③ 신청대상 자료의 사진 및 설계도(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④ 신청대상 자료의 이력 및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 신청대상 자료가 부동산인 경우 건축물대장, 토지(임야) 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제출 필요(행정정보 공동이용 구축 이전까지이며 구축 후에는 제출 불필요)
 - ※ 접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반환이 필요한 서류는 사전요청을 하여야 함

2-2. 서류검토

○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는 단계

○ 보완이 필요하거나 반려할 경우 신청자에게 아래의 결과를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1. 보완 요청

- ①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② 신청자가 과학관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2. 반려

- ① 신청 자료가 위·변조 또는 조작된 경우 ② 신청 자료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있는 경우
- ③ 사회적으로 공익성, 윤리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자료인 경우
- ④ 신청 자료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⑤ 신청자가 신청서의 취해를 요청한 경우

2-3. 서류심사

- 서류검토 이후,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아래의 사항을 심사함
 -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
 -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
- 서류심사 결과, 출석위원 평점 평균이 70점 이상일 경우 현장심사에 상정

..... <전문심사위원회>

- 개요: 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자연사 총 3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심사
- 구성: 각 분과위원회는 10인 이내(전문심사위원회는 총 30명 이내)
- 역할: 서류심사, 현장조사, 현장심사

2-4. 현장조사

- 현장조사는 아래의 사항을 조사함
 - 자료의 실제 보유 여부
 - 자료의 관리 상태 및 보존 환경
 - 신청 서류와 상이한 부분
 - 향후 보존관리가 필요한 부분
- 현장조사자: 전문심사위원 2인 이상(필요시, 관련 전문가 추가 파견가능)
- 현장조사 이후 현장심사 전까지 신청자에게 자료 및 서류의 보안을 요청할 수 있음

2-5. 현장심사

- 전문심사위원회는 현장조사 내용을 검토하여 종합심사에 상정이 필요한 자료인지 심사
- 현장심사의 내용은 종합심사에 활용

2-6. 공고 및 의견청취

○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종합심사에 상정할 자료는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 30일간 공고하여 각 계의 의견을 청취

- 각 자료에 대한 아래의 사항을 공고

- ① 생성·제작·개발·건립 시기 ②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
- ③ 자료 소재지 ④ 자료 유형
- ⑤ 상정 사유 ⑥ 의견 제출 기한 및 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 등

○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의견 제출서(「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0호 서식[6장.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의견접수 기간 내에 국립중앙과학관으로 제출

- 접수 방법: 우편 또는 전자우편(knsh@korea.kr)으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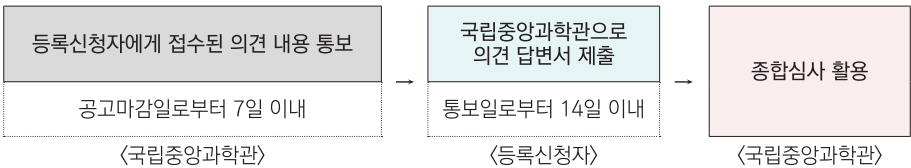
※ 우편의 경우, 의견청취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우)34143,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유산보존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담당자

-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종합심사에 활용하지 않음

- ① 의견 제출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②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없이 비방하는 내용을 제출한 경우
- ③ 의견청취기간을 초과하여 의견이 접수되는 경우

○ 의견청취 후 절차



※ 의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 제출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봄

※ 의견 답변서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6장. 관련 서식]을 사용

2-7. 종합심사

- 현장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종합심사위원회는 등록 기준 적합여부와 등록 필요성을 심사
- 종합심사위원회는 신청 자료의 명칭, 등록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 <종합심사위원회>

- 개요: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상정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심사
- 구성: 15인 이내
- 역할: 종합심사, 등록 자료 말소에 관한 사항, 그 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사

2-8. 등록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선정된 자료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 공고함

※ 공고 위치: 국립중앙과학관(<https://www.science.go.kr>)→소통마당→공지사항

1.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번호
2.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명칭
3. 생성·제작·개발·건립된 시기
4.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
5. 자료 소재지
6. 자료 유형
7. 등록 사유
8. 등록 일시

2-9. 등록증 교부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선정된 경우, 자료의 소유자·소유기관에게 등록증을 교부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경우, 이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관리기관에 등록증을 교부함

3장. 등록 이후 관리 · 지원

등록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는 아래와 같이 유형과 형태를 구분하여 등록대장에 기록 · 관리합니다.

〈자료 유형〉 (과학관법 시행령 별표1)

분류	세분류	내용
기초과학	물리 · 화학 · 생물 · 지구과학 · 수학 등	기초과학에 대한 관찰 및 실험을 통하여 그 원리를 이론화 · 체계화하는 기초이론 분야
응용과학	공학 · 농학 · 수산학 · 의학 · 약학 등	기초이론을 총괄적으로 응용하여 복합적 현상을 규명하는 분야
산업기술	에너지 · 정보통신 · 우주항공 · 선박 · 자동차 · 기계 · 중화학 · 메카트로닉스 · 의류 · 토목 · 건축 · 식물가공 · 금속 · 섬유 · 요업 등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실제 기술 분야
과학기술사	농사기술과 농기구의 발달사, 의식주생활과 도구류의 발달사, 흙 · 금속 가공공정과 도구류의 발달사, 돌 · 나무 가공공정과 도구류의 발달사, 뼈 · 가죽 가공공정과 도구류의 발달사, 천문지리의 발달사, 종이와 인쇄기술의 발달사, 의학의 발달사, 군사기술과 무기류의 발달사, 국악기의 발달사, 도량형의 발달사 등	과학기술의 역사와 그 원리를 총괄적으로 규명하는 분야
자연사	동물 · 식물 · 인류 · 고생물 · 광물 · 지질 · 천문 · 기상 · 해양 · 자연 · 생태 · 환경 등	자연계를 구성하고 있는 자료 및 현상과 자연의 역사에 관한 자료를 다루는 분야
기타		시설물 또는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분야

〈자료 형태〉

구분	예시
기록	연구논문, 저서, 보고서, 특허, 연구계획서, 도면, 실험노트, 공문, 기사, 발표문, 회의록, 일기, 편지, 메모 등 문헌 자료와 음성 · 영상 · 디지털자료
기반	연구실, 구조물, 기념비, 연구단지, 공업단지 등 기술 기반시설 및 기념자료
성과	발명품, 양산품, 부속품, 특허품, 샘플, 모형, 시제품, 제작품, 표본, 암석, 화석 등 과학기술 성과자료
활동	실험장비, 관측기구, 컴퓨터, 교육기자재, 각종 유품 등 과학기술 활동 관련 자료

3-1. 관리실태조사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된 자료의 소재지, 소유자, 자료 변형여부 등을 점검하여 소유자들이 장기적으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추진할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리실태조사는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으로 이루어집니다.

○ 정기점검

- 등록증 발급대장, 등록 대장에 기록된 내용의 변동사항을 2년 주기로 점검

○ 정밀점검

- 등록 자료의 보존·관리 상태를 정밀하게 점검

- 자료 형태에 따라 기록 자료는 3년, 기반·성과·활동 자료는 5년 주기로 점검

○ 절차

등록 자료 소유자·관리기관에게 실태조사 2~4주 전까지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조사 사실을 알림



국립중앙과학관 담당조사원이 유선연락 또는 등록 자료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자료의 소재지·소유자 변동, 자료 변형여부 등에 대해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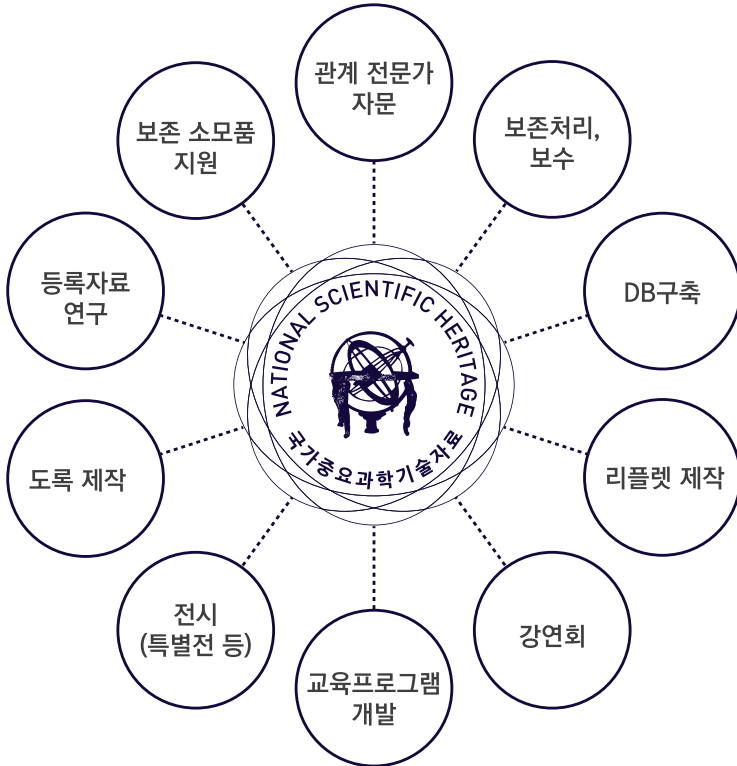
등록 자료의 소유자, 관리기관에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조사 결과를 알림



등록 자료에 대한 보존·관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을 경우
보존처리, 보존 소모품 지원 등 보존·관리에 대한 지원 실시

3-2. 등록 자료 지원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된 후, 자료의 원활한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4장. 등록제도 질의응답

Q1. 등록 신청은 자료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신청 주체는 자료의 소유권을 가진 개인과 기관입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과학기술자료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신청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관리기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청 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Q2. 자료가 등록되면 소유권이 변동되나요?

변동되지 않습니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은 자료의 관리를 지원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존을 위해 소유자의 권리, 권한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Q3. 살아있는 생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살아있는 생물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예시는 1장의 등록대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Q4. 등록번호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는 등록된 연도와 가장 먼저 접수된 순서로 정해집니다.

예) 2019년도에 등록되었으며 등록된 자료 중 등록 신청이 가장 먼저 접수된 경우: 제2019-1호

2023년도에 등록되었으며 등록된 자료 중 등록 신청이 세 번째로 접수가 된 경우: 제2023-3호

Q5. 심사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심사는 매년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총 2회 진행합니다. 심사기간은 서류심사일로부터 180일을 넘지 않습니다.

☞ 심사 절차: 서류심사 → 현장조사 → 현장심사 → 종합심사

Q6.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심사위원회는 전문심사위원회와 종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현장심사를 진행합니다. 종합심사위원회는 종합심사와 등록 말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 전문심사위원회는 3개의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심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 분과위원회	기초과학, 응용과학, 산업기술에 해당되는 자료의 가치를 평가하고 현장을 조사	10명 이내
과학기술사 분과위원회	한국 전통 과학기술에 해당되는 자료의 가치를 평가하고 현장을 조사	10명 이내
자연사 분과위원회	동식물, 광물 등에 해당되는 자료의 가치를 평가하고 현장을 조사	10명 이내

☞ 종합심사위원회는 1개의 위원회로 구성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합니다(15명 이내).

Q7. 등록과 관련된 서식은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을까요?

온라인에서는 아래의 방법으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안내서 내 6장. 관련 서식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 신청서, 신청대상 자료 설명서

- ① 국립중앙과학관 (<https://www.science.go.kr>)→과학관 소개→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 ②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과학관법」 별지 제1호서식(등록 신청서), 제2호서식(신청대상 자료 설명서)

☞ 의견 제출서, 의견 답변서

- ① 국립중앙과학관 (<https://www.science.go.kr>)→소통마당→공지사항→해당 공고 및 의견청취 게시글
- ② 국립중앙과학관 (<https://www.science.go.kr>)→과학관 소개→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 ③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행정규칙→「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견 제출서), 제11호서식(의견 답변서)

Q8. 등록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보존·관리와 활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존·관리: 보존처리와 보수 지원, 보존을 위한 소모품 지원, 관계 전문가 자문 등

☞ 활용: 특별전 등의 전시, 교육 등

※ 지원은 자료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자료의 보존, 활용 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진행됩니다.

5장. 관련 법령 및 고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과학관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10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2. "과학기술자료"란 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3.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란 과학기술자료 중 국가적 차원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국내 소재 자료를 말한다.

제5조의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말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자료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학기술자료가 제작·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에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등록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가 가치를 상실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어지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③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 절차, 등록사항 및 등록 말소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과학관법 시행령)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67호, 2019. 6. 18, 일부개정]

제3조(과학기술자료의 분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과학기술자료는 별표 1과 같이 분류한다.

제4조의2(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 법 제5조의3에 따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적 원리가 적용되거나 과학현상을 규명하여 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되는 것
2.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것
3. 과학기술발전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것
4. 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

제4조의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신청 및 심사 등)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과학기술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과학기술자료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대상 자료 설명서
 2. 신청대상 자료의 사진 및 설계도(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신청대상 자료의 이력 및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의2 각 호의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과학기술자료를 직권으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자료의 관리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대상 자료가 부동산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대상 자료의 건축물대장, 토지(임야) 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3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과학기술자료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2. 과학기술자료 관계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연구자
 3. 신청대상 자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자료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관리기관 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 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4(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기록·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한 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1. 명칭
2. 생성·제작·개발·건립된 시기
3.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

- 4. 소재지
- 5. 자료 유형
- 6. 등록 사유

제4조의5(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말소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3 제2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말소대상 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요청을 받은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3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말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과학기술자료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2. 과학기술자료 관련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연구자
3. 말소대상 자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은 그 등록 말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의 등록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 말소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시행 2019. 8. 9.] [시행 2019. 8.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71호, 2019. 8. 9.,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6항 및 제4조의4제5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및 심사, 등록 말소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등록 절차

제2조(등록 신청·접수)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의 신청은 국립중앙과학

관장(이하 “과학관장”이라고 한다)이 상시 접수한다.

제3조(서류검토) ① 과학관장은 접수된 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 서류 검토서를 작성하고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자(해당 과학기술자료의 소유자, 다만 국·공유재산인 경우 해당 과학기술자료의 관리기관)에게 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신청자가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해당 과학기술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국·공유 재산인 과학기술자료의 경우)이 아닌 경우
- ② 과학관장은 접수된 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 서류 검토서를 작성하고 신청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 과학기술자료가 위·변조 또는 조작된 자료인 경우
 2. 신청 과학기술자료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있는 경우
 3. 사회적으로 공익성, 윤리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자료
 4. 신청 과학기술자료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신청자가 신청서의 취하를 요청한 경우

제4조(전문가 심사) ① 시행령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전문가 심사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의 순서로 실시하며 서류심사의 경우 필요시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심사는 서류심사일로부터 180일을 넘지 아니한다.

- ② 심사는 1년에 2회 진행한다

제5조(서류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류심사를 위하여 제12조제1항과 같이 유형별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형별 전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신청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
 2.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서류심사 평가의견을 작성한다.
- ③ 서류심사 결과, 출석위원 평점 평균이 70점 이상일 경우 현장심사에 상정한다.

제6조(현장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현장심사를 위해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위원 2인 이상을 신청 자료 소재지에 파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신청 과학기술자료의 실제 보유 여부

2. 신청 과학기술자료의 관리 상태 및 보존환경

3. 신청 서류와 상이한 부분

4. 향후 보존관리가 필요한 부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심사위원을 현장에 파견 시 추가로 관계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현장조사 이전에 신청자에게 심사 일정 및 내용 등을 알려야한다.

④ 현장조사를 한 전문심사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현장조사 평가의견을 작성한다.

제7조(현장심사) ① 전문심사위원회는 제6조의 현장조사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여 현장심사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현장심사 평가의견을 작성한다.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자에게 현장심사 전까지 자료 및 서류의 보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현장심사 평가의견서는 종합심사에 활용한다.

제8조(의견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전문심사위원회 결과, 종합심사에 상정하기로 한 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0일 동안 공고한다. 이 때 해당 과학기술자료가 제작·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에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듣는다.

1. 명칭

2. 생성·제작·개발·건립된 시기

3.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

4. 자료 소재지

5. 자료 유형

6. 상정 사유

7. 의견 제출 기한 및 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 등

제9조(의견제출) ① 제8조에 따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기한 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고, 과학관장은 이를 접수한다.

② 과학관장은 의견제출서가 접수된 자료가 있을 경우, 공고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과학기술자료 등록신청자에게 내용을 통보한다.

③ 과학관장은 의견 제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견 제출자에게 알린다. 이러한 경우, 의견 제출서는 종합심사에서 활용하지 않는다.

1. 의견 제출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없이 비방하는 내용을 제출한 경우

3. 의견청취기간을 초과하여 의견이 접수되는 경우

④ 등록신청자는 제2항의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 답변서 및 증빙 서류를 과학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서의 내용을 인정 한 것으로 본다.

⑤ 의견 제출서와 의견 답변서, 증빙서류는 종합심사에 활용한다.

제10조(종합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심사를 위하여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 자료가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신청 자료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등록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선정된 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번호
2.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명칭
3. 생성·제작·개발·건립된 시기
4.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
5. 자료 소재지
6. 자료 유형
7. 등록 사유
8. 등록 일시

제3장 위원회 구성·운영

제12조(전문심사위원회) ① 전문심사위원회는 과학기술자료 유형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1. 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 분과위원회
2. 과학기술사 분과위원회
3. 자연사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심사는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행령 제4조의3제4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전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조사 및 심사한다.

1. 제5조에 따른 서류심사
 2. 제6조에 따른 현장조사
 3. 제7조에 따른 현장심사
- ⑤ 전문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사전에 심사 자료를 배포할 수 있다.
- ⑥ 전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⑦ 전문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전문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⑨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종합심사위원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15인 이내로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시행령 제4조의3제4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한다.

- ② 종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사한다.
1. 제10조에 따른 종합심사
 2. 시행령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등록 자료 말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종합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사전에 심사 자료를 배포할 수 있다.
- ④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⑤ 종합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종합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⑦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의참석 제척·회피) ①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 시 제척(除斥)된다.

1. 신청 자료가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
2. 신청자와 친인척(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친인척이었던 경우
3. 심사위원이 연구용역 등 신청 자료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경우
4. 심사위원이 신청자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심사·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사와 관련된 청탁을 받은 경우
3. 제13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간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심사위원회와 종합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국립중앙과학관 소속 공무원 중 등록제 업무 담당 과장으로하며,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현황을 설명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자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등록 자료 관리 등

제18조(기록관리) ①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른 사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한다.

② 등록증 발급 시 별지 제1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그 목록을 관리한다.

③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통계기반정책관리를 위해 시행령 별표에 따른 자료 유형별 등록건수 및 말소건수를 기록·관리한다.

제19조(등록말소) 시행령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말소심사를 할 경우 종합심사위원회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심사한다.

6장. 관련 서식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자	성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 개인은 미 기재
	유형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공공법인 [] 그 외 법인 [] 비법인단체(개인회사 포함) [] 그 외 개인 [] 기타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만 기재)		
	소유자와의 관계 [] 소유자 본인 [] 관리기관(국·공유재산만 해당)		
업무 담당자 * 개인의 경우 미 기재	소속부서		성명
	전화(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 대상 자료	명칭 (고유모델번호:)		
	소재지(보관 장소)		
	관리 위탁	성명 또는 단체명	
		주소 * 관리를 위탁한 경우만 기재 (전화번호:)	

「과학기술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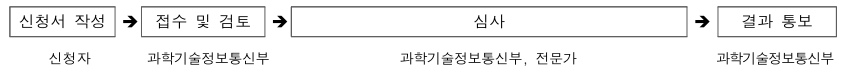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신청자 제출서류	1. 신청대상 자료 설명서 2. 신청대상 자료의 사진 및 설계도(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신청대상 자료의 이력 및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부동산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2. 토지(임야) 대장(부동산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없음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증질지(80g/㎡)]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신청대상 자료 설명서

(3쪽 중 제1쪽)

※ 본 설명서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의 중요한 평가 근거가 되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대상 자료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자료의 명칭	
1. 자료 개요	
용도	원 현
보존 상태	
수량	
소재지(보관장소)	
규모	(가로) cm (세로) cm (높이) cm
생성·제작·개발·건립 시기	

자료 연혁(생성·제작·개발·건립된 시기·과정·방법 등 요약)

수리 및 보존처리 이력

2. 신청대상 자료의 과학기술적 가치

※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 별도 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신청대상 자료의 역사적 가치

※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 별도 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신청대상 자료의 교육적 가치

※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 별도 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5. 그 외 등록·지원 필요성

※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 별도 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설명서 작성방법 안내	
1. 자료 개요	
1-1. 용도	신청대상 자료가 사용되었던 당시의 용도와 현재 용도를 서술
1-2. 보존 상태	신청대상 자료의 보존 상태 정도를 서술
1-3. 수량	신청대상 자료의 수량을 기재 예시) 단일 권의 경우 1권 12권이 세트인 경우 1건 12점
1-4. 소재지(보관장소)	신청대상 자료가 보존되고 있는 장소 기재
1-5. 규모	신청대상 자료의 규모를 가로×세로×높이(cm)로 기재
1-6. 시기	신청대상 자료의 생성·제작·개발·건립된 시기 기재
1-7. 자료 연혁	신청대상 자료의 탄생, 소유자(관리기관) 변경, 훼손 등 현재까지 제작·사용되고 보관되어 온 과정 예시) 1990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발 진행
1-8. 수리 및 보존처리 이력	수리 또는 보존처리를 한 자료거나 추측으로 알 수 있는 경우 기재(단, 추측의 경우 추측이라고 반드시 명시)
2. 과학기술적 가치	
2-1. 적합성	과학기술적 원리가 적용된 자료인지 또는 발달과 관련된 정도 서술
2-2. 대표성	새로운 과학기술적 진보를 이룬 자료인지 또는 특정 과학기술 발전 단계에서 최초로 제작된 자료인지 등 서술
2-3. 기술적 독창성	외국 기술과 다른 차별적 기술이 적용되어 기능 및 성능을 향상시킨 자료인지 등 서술
2-4. 과학기술발전 파급효과 (타 기술발전 등에 준 효과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에 미친 영향이 크거나 향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자료인지 등 서술
2-5. 희귀성	신청대상 자료의 국내외 보존·보관 수량이 적거나 형태·재질·용도가 특이한지 등 서술
3. 역사적 가치	
3-1. 과학기술 계승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자 정신을 보여주는지, 과학기술사적으로 중요하거나 모범이 되는 등 계승이 필요한 가치가 있는지 서술
3-2. 과학기술 시대성	당대 생활모습이나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한 자료인지 또는 국민 생활 향상이나 사회·문화적 발전에 기여했는지 등 서술
4. 교육적 가치	
4-1. 교훈성	과학기술·역사적 가치가 모든 세대에게 귀감이 되는 정도 서술
4-2. 보급성	신청대상 자료의 제작, 활용, 보존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대중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지 또는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 서술
4-3. 활용성	전시 등을 통한 활용 가치가 있는지 또는 현재 상태에서 전시·연구·교육이 가능한지 등 서술
5. 그 외 등록·지원 필요성 등	
등록·지원 필요성, 그 외 추가적 내용 서술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의견 제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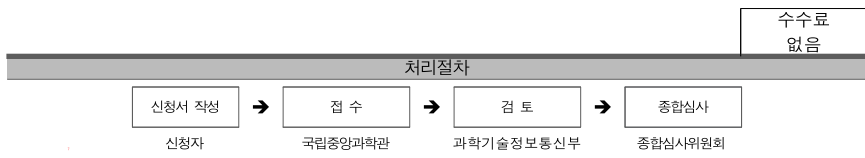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반려사유
신청자	성명	
	주 소	
	전 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의견제출 자료	명 칭	
의견제출 사유	(* 의견제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1. 의견제출 내용 2.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210mm×297mm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의견 답변서

답변자	성명			
	주 소			
	전 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답변대상 자료	명 칭			
답변내용	※ 제출된 의견에 대한 답변내용 및 설명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증빙자료 목록 1. 2.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답변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